

第210回 北韓法研究會 月例發表會(2015. 2. 26)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

최우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일 시: 2015년 2월 26일 (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서울 중구 태평로)

北 韓 法 研 究 會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

최우진(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 들어가며

가. 개요

라선시¹⁾에서는 중국 화폐가 유통되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다. 라선시 시내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주거지나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발전이 없었던 라선시가 이제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설 수 있을까?

라선경제무역지대(이하 “지대”라 한다)는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특구이다, 북한은 1991. 12. 28. 라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북한 문헌은 이 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유를 중국, 러시아와 인접하였다는 지형학적 이점 및 나진항 및 선봉항 같은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지형적 이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

북한은 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이후 1년여가 경과한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동법은 지대의 개발과 관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이다. 동법은 그 후 6차례 걸쳐 개정이 되었고,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11. 12.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 “지대법”이라 한다)이다.

나. 조중협정의 체결과 총계획요강의 작성

지대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래 20년이 지났고, 6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초기에 이 지역에 투자하였던 조중련계 자금은 북측에 대한 신뢰부족 등을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하였다. 그 후 1990년대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투자 자체가 위축되었고, 그 이후에는 북한

- 1) 이 글에서는 북한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또는 북한의 지명이나 고유명사는 북한식 맞춤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 2) 1993. 9. 24.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은덕군 3개리(125km²)가 선봉군에 넘어옴으로써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746km²가 되었다.
- 3) 김일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과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때 대하여 -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발전소 건설관계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4. 6. 16. -”, 김일성전집(94), 조선로동당출판사(2011. 4.), 386면 참조

의 핵심협 등으로 인한 군사적, 정치적 긴장으로 인하여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0년도 북중간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협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국은 이 지역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묶어 양국이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하기로 하고, 2010.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이하 “조중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중협정에 따라 구성된 『조중공동지도위원회』는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양국간의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하 “총계획요강”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된다.

총 계획요강은 지대 중 약 470km²(최종면적은 북한의 현존 행정구역에 따라 확정하기로 함)와 황금평경제지대 중 약 16km²(최종면적은 북중 쌍방이 공동측량한 후 확정하기로 함)을 공동개발, 공동관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중협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총 투자규모는 약 100억 달러이며, 현재까지 합의된 투자금액은 약 20억 달러인데, 이 중 5,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한다.⁴⁾

다. 지대의 법규현황 및 본 연구의 목적

중국으로서는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된 사항이 북한의 국내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담보될 필요가 있다. 총계획요강 제47항은 “조선측은 사소한 정책에 기초하여 두 경제지대에 적용할 법률을 전문적으로 제정하며 중국측은 해당 기술과 자문봉사의 제공을 희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계획요강에서 중국과 합의한 바에 따른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 지대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정의 전면적인 제·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먼저 북한은 2011. 12.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⁵⁾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법을 살펴보면, 구 라선경제무역지대법

4) 조봉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KDI 북한경제리뷰(2014년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44면

5)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도 채택되었다.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뿐만 아니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고, 북한의 법규정도 위 두 경제지대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규정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하므로, 이하에서 ‘조중협정’이나 ‘총계획요강’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부분을, ‘지대’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또는 문맥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 중 조중공동관리구역을 의미한다.

(2010. 1.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수정보충된 것) 중 3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정·신설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⁶⁾

다음으로 북한은 2013. 9. 12.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⁷⁾으로 4개의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총계획요강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지대의 개발, 관리 및 기업의 설립·운영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핵심규정들이다. 위 4개 시행규정의 명칭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 지대의 4개 시행규정의 명칭 및 그 내용]

규정 명칭	내용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 ⁸⁾	기업의 창설,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의 재정회계, 기업의 변경 및 해산, 제재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⁹⁾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 노동보호, 사회문화시책, 제재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¹⁰⁾	관리위원회의 기구,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신소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¹¹⁾	개발계획,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 건물과 부속물의 철거, 제재 및 분쟁해결

경제특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세칙, 준칙이 필요하다. 지대법 제10조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칙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작성하고(지대법 제30조 제1호), 준칙은 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지대법 제27조 제1호).¹²⁾ 다만, 지대에서 적용되는 세칙이나 준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유옥·김병필,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통권 제11호), 법무부(2012. 8.), 60면
 7) 4개의 시행규정이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지대 내에서는 지대법과 시행규정이 북한의 다른 법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우진,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 조총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Vol.699), 법조협회(2014. 12.), 155면). 참고로 지대법 제10조는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경제무역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무역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2013. 9.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8호로 채택된 것
 9) 2013. 9.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9호로 채택된 것
 10) 2013. 9.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0호로 채택된 것. 이하 “관리규정”.
 11) 2013. 9.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1호로 채택된 것. 이하 “개발규정”.
 12)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유사하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칙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개성공업지구법 제22조 제3호), 준칙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9호)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지대의 시행규정들 중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총협정의 체결 및 총계획요강의 작성 이후 지대에서 북중간의 공동개발, 공동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의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행규정인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대의 관리규정

가. 지대의 거버넌스

총계획요강은 지대에서 북중간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대에서는 양국 정부로 구성되는 공동지도위원회의 지도 하에 양국의 각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공동관리위원회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개발사업은 지정된 개발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총계획요강에 따른 각 협조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간 협조지도체계란 지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총협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정책과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과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총계획요강 제34항).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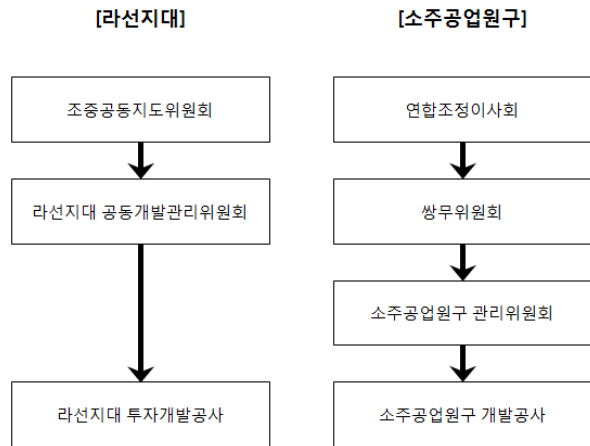
공동관리체계란 북중의 해당 지방정부들로 구성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¹⁴⁾, 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 북한이 지대의 개발협조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공동지도위원회의 해당 결정에 근거하여 총계획요강 및 상세한 계획의 실시를 책임지며, 지대의 투자, 개발, 건설, 운영과 관계되는 투자유치, 대상심사비준, 기업설립, 환경보호 등 관리권을 행사하며 토지의 1급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개발운영방안을 심사결정하며 쌍방 정부가 합의한 기타 행정관리정책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총계획요강 제35항).

개발경영체계란 공동관리위원회가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개발공사에 위임하여 지대 내에서 토지와 해안선의 1급개발, 상업개발을 책임지도록 하며 동시에 상응한 투자권, 경영권, 수익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총계획요강 제36항).

13) 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협력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1차 회의는 2010. 11. 평양에서, 제2차 회의는 2011. 6. 요령성과 길림성에서, 제3차 회의는 2012. 8.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4)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사무청사 착공식과 현판제막식이 2012. 10. 26. 라선시에서 열렸다(통일뉴스 2012. 10. 27. 13:11:01 게재 기사, “라선경제무역지대 사무청사 착공, 라진-원정도로 개통완료”).

이와 같이 북한-중국 공동추진체제와 관련해서 사업 초기부터 양국 고위층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위 지도체제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다분히 소주공단의 국제공동개발 추진체제를 모방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⁵⁾ 소주공업원구의 경우 중국 부총리와 싱가포르 부수상이 구성하는 “연합조정이사회”와 소주 시장과 싱가포르 주룽타운 장관이 구성하는 “쌍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소주공업원구 관리위원회”가 행정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소주공업원구 개발공사”¹⁶⁾가 공업원구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¹⁷⁾ 지대와 소주공업원구의 지도, 관리, 개발 체계를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지대와 소주공업원구의 공동지도, 공동관리, 공동개발 체계]



15) 장환빈, 『개성공업지구와 소주공업원구 비교 연구』(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7.), 99면
 16) 소주공업원구 개발공사는 싱가포르 기업 20개사와 외자기업 4개사로 구성된 싱가포르 측 파트너인 싱가포르 소주 도시개발(Singapore Suzhou Township Development) 컨소시엄이 65%의 지분을, 중국의 11개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중국소주공업단지공사(China Suzhou Industrial Park Corporation) 컨소시엄이 35%의 지분을 갖는 합작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임성택,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법률(통권 제16호), 법무부(2013. 11.), 91면]. 그 후 싱가포르가 2001. 1. 1. 중국측에게 개발공사 지분 35%를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는 싱가포르측이 35%, 중국측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임성택, 위 글 92면).
 17) 임성택, 위 글, 88면-89면

한편, 지대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 관리기관 -> 개발업자』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¹⁸⁾ 이는 경제개발구¹⁹⁾ 및 개성공업지구²⁰⁾와 유사하다. 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상의 지도, 관리, 개발 체계를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 지대, 경제개발구, 개성공업지구의 지도체계]²¹⁾



18) 지대법 제8조는 “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경제개발구법(2013. 5. 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된 것) 제31조는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개성공업지구법 제21조는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지대나 경제개발구와 같이 지도->관리->개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북측의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도기관이 되고, 남측의 인력이 주도하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관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21)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란 북측의 “대외경제성”을 말한다. 북한은 2014. 6.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폐합해 대외경제성을 출범시켰다(연합뉴스 2014. 7. 24. 11:26 게재, “北. 경제개발구 급속확대...대외경협 의지 과시”). 지대의 지도기관인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인 것으로 이해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인 “대외경제성”의 역할 및 위상, 그리고 모든 국가작용에서 유일적 지도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에 비추어 그러하다. 지대법도 “이 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을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위 두 기관 사이의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규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관리위원회의 기구, 제3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제4장은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위원회의 기구,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리위원회의 기구

지대 관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이다(관리규정 제2조). 관리위원회는 지대 내의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지대법 제24조, 관리규정 제2조). 관리위원회의 관할범위는 지대개발총계획에 따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권한을 넘겨준 지역으로 하며, 지대개발의 진척에 따라 관할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리규정 제3조). 총계획요강에 따른 공동개발, 공동관리 구역의 면적은 470km²로써 이는 지대의 총 면적 746km²의 약 68%에 달하는 면적이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총회계사 및 그 밖의 성원으로 구성된다(관리규정 제7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전반사업을 주관하며 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상무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 사업을 대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상무부위원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관리위원회 상무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서기장**은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맡아한다. **총회계사**는 관리위원회의 재무, 투자 및 용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한다(관리규정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이사장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²²⁾ 그러나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및 해임 할 수 있는 반면(개성관리규정 제8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 못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권한은 모두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관리규정 제9조). 참고로, 경제개발구의 경우에도 관리기관의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²³⁾ 따라서, 관리기관의 성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지대와 경제개발구는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22)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2003. 12.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로 채택된 것, 이하 “개성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는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2013. 11.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7호로 채택된 것, 이하 “경제개발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

24) 다만, 경제개발구의 경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관리위원회의 기타 성원의 임명 및 해임과 관련하여도 위원장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리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한다(관리규정 제9조). 경제개발구의 경우에도 그 밖의 관리기관은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자격심의를 한 다음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8조).

이와 같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이사장의 권한과 비교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장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개성관리규정 제5조). 이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에서 그 행정기관인 관리기관의 구성을 개발업자에게 사실상 백지위임한 것은 북측 행정기관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 개발업자가 행정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행정을 입주기업들에 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²⁵⁾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상무회의”이다. 상무회의는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관할지역과 대상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최종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지며 결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포한다(관리규정 제8조).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도 동일하게 관리기관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7조).

관리위원회는 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로서, **행정종합국, 계획건설국, 재정국, 경제협조국, 항만관리국**과 같은 부서들을 둔다(관리규정 제12조). 참고로, 경제개발구의 경우 행정종합, 계획 및 건설, 투자유치, 노동, 재정 같은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어(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11조), 지대의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공단개발팀, 출입사업부, 법질서팀, 기술교육부, 협력부** 등 8개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다.²⁶⁾

그 외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관리규정 제14조), 이는 경제개발구나 개성공업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대의 경우 북측의 합의에 따른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측과의 협의 및 중국에서의 투자자유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없고,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지대와 다른 점이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7조).

25) 범법법인 태평양,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주)로엔비(2004.), 15-16면, 유육·김병필, 위 글, 63면에서 재인용.

26) 김광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고방안”,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5주년과 법·제도 정비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2012. 6. 20.), 94면

마.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지대법 제27조는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²⁷⁾²⁸⁾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설계문건의 보관
7.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8.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관할지역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이와 같은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은 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준칙작성, 개발계획의 실행, 재정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관리위원회는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준칙을 작성한다. 준칙은 관리위원회 상무위

- 27) 경제개발구법 제36조에 따르면,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의 사업내용은 ①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②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③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④ 인원, 운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가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개발구법에서 빠져있는 사업의 내용은 경제개발구관리규정에 의하여 모두 보충되어 있어(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제18조),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제20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제20조), “인원과 운송수단의 출입, 물자의 반출입 협조(제23조)), 결국 관리위원회와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의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 28)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내용은 ① 투자조건의 조성 과 투자유치, ②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③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④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계의 등록, 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⑥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⑦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⑧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⑨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⑩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바,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과 유사하다.

원회에서 토의, 결정하며, 관리위원회는 준칙을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등록한 다음 공포하여야 한다(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이는 경제개발구의 경우도 동일하다.²⁹⁾ 참고로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준칙의 제정, 개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준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³⁰⁾

관리위원회는 지대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책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개발계획의 해당 사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넘겨주어야 한다(관리규정 제21조). 경제개발구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³¹⁾

관리위원회는 관할지역예산의 편성, 재정수지 같은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세우고 운영한다. 설립초기와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관리규정 제25조). 경제개발구 관리기관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³²⁾ 한편,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데,³³⁾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수취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관리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관리위원회의 규약 작성(관리규정 제18조),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관리규정 제22조), 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관리규정 제23조), 대상건설명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관리규정 제24조),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관리규정 제26조), 환경보호와 소방대책(관리규정 제27조), 봉사제공(관리규정 제28조), 사업보고(관리규정

- 29) 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15조는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준칙을 작성한다. 준칙은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준칙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0) 개성공업지구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2005. 2. 3. 제정) 참조
- 31) 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16조는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책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관리기관이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2) 경제개발구관리규정 제20조는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의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세우며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설립초기에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3)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하며,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개성관리규정 제19조). 부족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의 0.5%로 한다(개성관리규정 제20조).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수입과 기업의 월노임총액의 0.5%에 해당하는 보충자금으로는 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관리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에 따른 민족공동체 회복 항목의 남북협력기금을 남측으로부터 대출형식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김광길, 위 글, 94면).

제29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개발구관리규정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에서 제기 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라선 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해당 성원, 주요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지대법 제34조)라고 규정하여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자책임회의³⁴⁾와 유사한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정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3. 지대의 개발규정

가. 개요

총계획요강은 지대에서 6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대 산업이란 ① 원유화학, 야금, 건재 등을 주체로 한 **원자재공업**, ② 조선업, 배수리, 자동차 등을 주체로 한 **장비공업**, ③ 컴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 제품 등 전자공업을 주체로 한 **첨단기술산업**, ④ 농수산물가공 및 일용소비품, 피복을 주체로 한 **경공업**, ⑤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 등을 주체로 하는 **방사업**, ⑥ 농업새품종, 새기술, 새장비시험도입, 농업생산체계장조를 주체로 한 **현대고효율농업**을 말한다(총계획요강 제4장).

이와 같은 다양한 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지대법 및 개발규정은 『개발총계획 -> 지구개발계획 -> 세부계획 -> 대상계획』에 이르는 4단계의 개발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방식도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 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인정된다(지대법 제13조). 여기에 관리규정은 개발방식 중의 하나로서 도급생산경영 방식도 추가하였다(관리규정 제5장).

개발규정은 총 7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개발계획, 제3장은 토지종합개발, 제4장은 특별허가경영, 제5장은 도급생산경영, 제6장은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제7장은 제재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4단계의 개발계획 및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 등 지대에서 인정되는 개발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4)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개성관리규정 제16조).

나. 개발계획

경제무역지대의 개발³⁵⁾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지대법 제12조).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이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으로 구성된다.

개발총계획³⁶⁾은 개발총계획의 목적과 범위, 면적, 건설목표, 산업발전과 산업구건설계획, 중요하부구조건설계획, 항구건설과 해안선이용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총계획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작성한다(개발규정 제7조).³⁷⁾

지구개발계획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획의 범위와 면적, 계획기간, 총적발전목표, 구역별관리계획, 총배치구조와 부지배치계획,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계획, 녹지 및 경관계획, 환경보호와 환경위생계획, 재해방지계획, 단계별건설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지구개발계획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개발규정 제8조).

세부계획은 지구개발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구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토지이용구역경계선과 매개 구역의 건물높이, 건물밀도, 녹지조성율, 보조적인 공공시설 설치요구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계획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개발규정 제9조).

대상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계획은 개별 기업이 작성하며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행한다(개발규정 제10조). 기업이 부득이하게 대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발규정 제10조).

다. 토지종합개발

토지종합개발이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정리하고 상하수도,

- 35) 개발이란 기업이 개발계획에 따라 일정한 지역 또는 대상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물공사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발규정 제1조 제1호).
- 36) 개성개발규정 제3조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7)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총계획은 지대의 개발총계획과 지구개발계획을 혼합한 형태로 이해된다. 개성개발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개발총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지대와 개성공업지구의 차이점은 지대의 경우 개발총계획 및 지구개발계획을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반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발총계획을 개발업자가 작성한다는 점이다.

전기, 난방, 도로, 통신 같은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한 다음 공업용부지와 기타 건설용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개발규정 제2조). 지대에서 토지종합개발은 개발기업이 수행한다. 개발기업의 선정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한다(개발규정 제12조).³⁸⁾

(1) 개발업자의 선정

개발업자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개발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개발방안을 작성, 공포하는 절차이다. 개발방안이란 구체적인 개발대상의 명칭과 개발규모, 개발방식, 개발기간, 단계별 개발계획, 대상경제 기술지표, 총투자액, 개발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담은 것을 말한다(개발규정 제13조).

둘째,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개발희망자와 협상을 진행한 다음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이때 개발희망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 입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선정한 다음 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개발규정 제14조).

셋째, 개발계약을 체결한 개발희망자가 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을 제출하는 절차이다. 개발사업권승인신청서에는 투자 및 개발규모, 개발대상과 관련한 단계별투자계획(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건설계획) 등을 기재하며, 개발계약서사본, 해당 증빙문건(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은행신용확인서)사본, 투자가가 속한 국가의 해외투자승인증서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발희망자는 이와 같은 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을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발규정 제15조).

넷째,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에 대해 승인하고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이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개발사업권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개발규정 제16조). 개발희망자는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받아야 개발기업이 되며, 이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개발기업등록을 하

38)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발업자의 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되, 남북간의 합의서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개성개발규정 제2조). 2002. 12. 4.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개발업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LH와 현대아산이 개발업자로 선정되었다.

여야 한다(개발규정 제17조).

(2)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이와 같이 개발희망자가 개발기업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개발기업은 라선시 국토관리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위원회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³⁹⁾, 면적, 구획, 용도,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등을 규정한다(개발규정 제18조).

개발기업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개발규정 제19조). 개발기업이 토지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1차 납부를 하면 라선시 국토관리기관은 개발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한다.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개발기업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토지이용증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발규정 제20조).

개발기업은 대상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건물소유권을 등록하여야 한다(개발규정 제22조).

(3) 부동산의 양도, 저당 등

개발규정은 개발업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임대 및 저당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양도·임대는 개발업자로 하여금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당은 개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개발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기업에게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부착물을 임대할 수 있다(개발규정 제23조).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토지이용권변경등록, 건물소유권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발규정 제24조).

또한, 개발기업은 대부담보 또는 채무상환담보로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저당등록을 하여야 하며, 저당권은 저당등록을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발규정 제25조).

39)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이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지대법 제16조).

라. 특별허가경영

특별허가경영이란 기업이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특별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상에 대한 건설을 진행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개발규정 제2조 제3호).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특별허가를 주어 전기, 난방, 가스, 상수, 오수처리, 오물처리, 도로, 다리 등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발규정 제26조).

개발규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특별허가경영은 기업이 지대 내에서 BOT 방식40)에 따른 인프라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지대에서만 특수하게 인정되는 개발방식으로서, 동일한 조중협정 및 총체적요강을 기초로 제정된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은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또는 합의에 의한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3조).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등의 하부구조건설부분의 투자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개성개발규정 제10조, 제11조)41), 건설->경영->자산이전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특별경영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는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에 특별허가경영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별허가경영계약에서는 경영대상의 명칭, 경영방식, 지역과 범위, 경영기간, 투자방식, 투자회수방식, 특별허가비용,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이행담보, 경영기간의 위험부담,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대상이전방식과 절차42), 위약책임, 분쟁해결방식 등을 정한다(개발규정 제27조).

개발규정은 특별허가경영자의 투자금 회수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 40) Build(건설)-Operate(운영)-Transfer(이전) 방식의 사업을 말하며, BOT 사업에서 기업은 자신의 자금으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운영함으로써 투자금을 환수하고 수익을 얻는다. 일정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인프라시설을 사업허가권자인 정부기관 등에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41) 개성개발규정 제10조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하부구조건설부분의 투자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2) 특별허가경영자는 경영기간이 끝나면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별허가경영대상을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나 그가 지정한 단위에 무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개발규정 제33조).

특별허가경영자는 개발기업으로부터 자기가 제공한 생산물 또는 봉사비용을 보상받는 방식,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불받는 방식, 기타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발규정 제28조). 또한, 특별허가경영자는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규정 제30조).

특별허가경영자의 경영권은 회수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만약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특별허가경영권을 회수할 경우에는 제때에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발규정 제32조).

마. 도급생산경영

도급생산경영이란 투자자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작지, 산림, 호수, 진펄 같은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이용하여 작물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개발규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도급생산경영방식은 지대법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개발규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대에서 도급생산경영을 하려는 투자자는 정해진 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계약에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양상태, 도급생산경영기간과 시작 및 마감날자, 토지의 용도, 수익분배방식, 도급생산경영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종결과 취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정한다(개발규정 제34조).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도급생산경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생산경영계약서사본을 함께 내야 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도급생산경영계약서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발규정 제35조).

도급생산경영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등록하고 도급생산경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도급생산경영증서를 받은 날부터 도급생산경영기업이 된다(개발규정 제36조). 도급생산경영기업은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도급생산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계약을 맺고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급생산경영권의 양도방식과 가격은 도급생산경영기업이 정한다(개발규정 제38조).

바. 건물과 부작물의 철거 및 보상

총계획요강은 지대에서 6대 산업의 중점적 발전 및 항구, 도로, 철도, 비행장, 전력, 급수, 정보 및 통신 등 기초시설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지대의 인구는 20만 명이 넘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주거지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기존의 주거지 및 시설의 철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계획요강은 지대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범위도 넓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발규정이 정하고 있는 철거 및 보상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대에서 건물, 부작물의 철거를 맡아 할 기업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발규정 제39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철거시작 30일 전에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는 철거의 범위와 대상, 철거기간 등을 밝힌다(개발규정 제40조).

철거대상의 보상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개발규정 제41조). 철거비용의 보상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나 개발기업이 현금지불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은 철거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을 수 없다. 철거대상의 가치는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여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한다(개발규정 제42조).

철거를 맡은 기업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 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부작물 등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⁴³⁾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나 개발기업이 부담한다⁴⁴⁾(개발규정 제43조).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은 총계획요강 및 지대법에서 규정된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시행규정들의 제정에는

43) 개성개발규정 제7조는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작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작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44) 개발규정 제8조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작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개발업자가 철거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발기업뿐만 아니라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도 비용의 부담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지대의 경우와 비교된다.

소주공업원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특구를 운영한 중국의 경험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개성공업지구에서 축적한 북한의 노하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대의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은 경제개발구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바, 지대의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을 단순히 조중협정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직 관리규정 및 개발규정은 총계획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협조체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계획요강에 따르면 지대 중 조중공동관리구역 내에서는 양국간의 협조체계에 따른 공동관리, 공동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정 중 다수의 조항에서 일정한 사안과 관련한 관할, 감독기관을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리규정은 관리위원회 성원의 임명 및 해임(제9조), 관리위원회의 부서설치(제12조), 관리위원회의 규약(제18조), 준칙의 등록과 공포(제20조) 등과 관련하여, 개발규정은 개발총계획(제7조), 개발사업권의 신청(제15조), 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제16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18조), 토지이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0조), 도급생산경영 신청 및 승인(제35조), 도급생산경영승인의 등록(제36조), 도급생산경영권의 이전(제38조), 철거공사(제40조) 등과 관련하여 관할, 감독기관을 관리위원회가 아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라선시 국토관리기관 등 북측의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규정, 세칙, 준칙 등이 총계획요강이 예정하고 있는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지, 아니면 북측의 독자적인 경제특구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는, 중국이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바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조속히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맞물려 있다. 중국은 북한이 개발, 관리권을 과감하게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 한 본격적인 투자를 미룰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중국에게 쉽게 지대 내의 토지와 행정·관리권을 넘겨주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개발규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는 이에 따라 지대에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별허가경영방식(BOT방식)의 경우 투자자로서는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금 회수 방안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를 착수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규정에서는 차입금의 조달을 위하여 지대 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개발규정 제25조), 인프라 자산의 운영에 대한 대가 외에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개발규정 제28조). 그러나, 담보자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담보권의 실행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개발규정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만을 신뢰하고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할 금융

기관은 없을 것이다. 또한, 생산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북측기관이 인프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이 원만히 회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프라 투자를 실행할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시행규정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정들이 많아, 관련 조항의 문언만 보고는 실제로 지대 특유의 개발,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상면적이 40km²에 불과하고 사업내용도 지대보다는 단순한 개성공업지구만 하더라도 현재 16개의 시행규정과 51개의 준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규정, 세칙, 준칙 등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5. 보론 - 우리 기업의 나선경제특구 투자와 관련한 법적 고려사항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남북러 철도연결 구상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기업은 중국, 러시아와 접하여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사업을 하거나,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기지로 삼거나,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직접 나진항을 통해 또는 중국 대륙으로 수출하거나, 호텔, 관광업을 하거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자보장

우선 우리 기업이 지대법에 따른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지대법 제4조는 “경제무역지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지대법은 굳이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추후 개정시에 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측에서는 우리 기업은 당연히 지대법 제4조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대법 제7조는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 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여 할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지대법은 국유화 이외에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소유권 박탈 이외에 사용제한 등도 금지하고 있고, “해당법적절차를 거치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도 명시하였는바, 이는 외국인투자보호와 관련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0. 12. 16.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우선 적용될 것이다. 동 합의서 제8조는 “투자자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대법에 더 유리한 규정이 없는 한 동 합의서가 먼저 적용된다. 동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와 관련한 “허가 및 보호”(제2조), “대우”(제3조), “수용 및 보상”(제4조), “송금”(제5조), “대위”(제6조), “분쟁해결”(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합의서 제4조 제1항은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대법 보다 더 강하게 투자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보험

개성공업지구와 비교하여 지대에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예상된다. 지대의 면적은 746km²로서 면적이 40km²인 개성공업지구의 약 18배에 달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 접하여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상 물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등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개발 대상 규모의 방대함, 이 지역이 남측에 의하여 관리, 개발이 주도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프라 시설 투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라면 몰라도,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또는 민관공동투자)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가 적절한 보험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에서의 보험사업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지대법 제63조는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영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보험회사도 북측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보험은 북측에 소재한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보험을 국가의 조세작용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우리기업의 경우 남북경협/교역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외에는, 현재로서는 보험에 의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대의 본격적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사업이 예상되는 점 및 남북경협/교역보험의 보험한도가 7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북경협/교역보험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대에 우리 보험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가 진출하고, 이들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 신변안전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측 인원의 수시 입출입 및 장기체류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국민이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대법은 제9조에서 “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라는 표제 하에 “경제무역지대에서 국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에서의 “법에 따른 보호”는 북측 법률에 따른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국민이 이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북측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북측의 형사절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지대법 제9조 3문은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의 이 지역 출입과 관련해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정부와 북측당국간 합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4. 1. 29.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벌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대는 펜스에 의하여 북측의 일반 주민과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등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및 주거지, 북측 주민의 주거지와 투자 대상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펜스를 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면적도 개성공단의 18배에 달한다. 따라서, 지대에서의 우리국민 출입, 체류와 관련해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의 경우와 동일한 합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이르면 상당수의 우리국민이 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수시로 입출입하게 될 것이므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신변안전 보장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라. 기타 행정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개발, 관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새로 제정된 시행규정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체계 안에서 우리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이다. 특히 통신, 통행, 통관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특성과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 다른 취급을 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우리정부와 북측 당국 사이에 이러한 사항을 정하는 합의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체결된 합의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지역이 개성과 같이 남한에 접하여 있지 않는 점, 중국 및 러시아 등 제3국 투자자들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대법은 제10조에서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무역지대법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무역지대법규

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대의 시행규정인 관리규정 제6조는 “관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이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규정 제5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에 남한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북측에서는 여기에 남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개발 또는 지속적인 개발이 어렵다. 이하에서는 유엔, 미국 및 유럽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안 제1718호(2006. 10. 14.)를,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안 제1874호(2009. 6. 12.)를, 은하3호 발사에 대응하여 결의안 제2087호(2013. 1. 22.)를,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안 제2094호(2013. 3. 8.)를 채택하였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결의안 제2094호에 따르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향/발 대량의 현금(bulk cash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하여 금지활동, 결의위반, 제재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북한 향/발 품목 관련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catch-all”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측에서의 대부분의 사업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미국인(“US Person”)이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미국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주로 하는 제3국의 회사에 미국인이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재화, 서비스, 기술이 미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투자하는 회사는 대북사업을 할 수 없고,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 서비스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르면 북한에 미국산 상품의 재수출,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면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규정은 2013. 3. 26.자 Council Regulation No 296/2013이다. 이에 따르면 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설립된 법인과 ②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법인이 동 규범의 수범자가 된다. 동 규정은 부속서 및 common list of military equipment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품, 기술의 매매, 공급, 수출 및 이와 관련한 자금조달,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목록이 방대하여 대부분의 기계장치, 전자장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에 연고가 있거나 유럽에서 활발한 사업을 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대북사업을 함에 있어 동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